

약가유연계약제 시행 관련 안내

- 약가파일 제공 방식 변경 및 요양기관의 약제비 산정 등 -

-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(보건복지부령 제1171호, 2026.4.15.) 일부개정에 따라 약가유연계약제가 시행('26년 6월부터 적용) 되오니, 요양기관 및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(이하 '청구S/W업체')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약가유연계약제 개요 >

- (목적) 신약 등 약제의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국내개발 약제 대외 경쟁력 강화
- (운영방식)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의약품의 '상한금액표 금액'*과 '별도합의 상한금액**'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 등에 약제비 산정을 위한 '별도합의 상한금액'을 안내하여 환자 불편 최소화

* 상한금액표 금액: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)」에 고시된 금액

** 별도합의 상한금액: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공단 및 제약사 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한금액으로서, 실제 건강보험 청구·심사·지급 시 기준 가격

- ① **요양기관은 반드시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에 대해 '상한금액표 금액' 이 아닌 '별도합의 상한금액' 기준으로 약제 단가를 산정·수납하고, 요양급여비용(약제비)을 청구해야 합니다.**

※ 약제비 산정 등 상세내용은 [붙임2] 약가유연계약제 질의응답(Q&A) 참조

- ②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에 대한 **'별도합의 상한금액'은 매월 제공하고 있는 「약가파일」을 통해 안내하며, 현재 제공 중인 약가파일*과 동일한 형식이므로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별도 개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**

* 약가파일 상한가 칼럼에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의 '별도합의 상한금액'을 적용 후 제공

- ③ **'별도합의 상한금액'의 안내 대상(요양기관 및 청구 S/W업체)의 제한으로 「약가파일」 제공 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**

※ '26. 6월 시행에 따른 적용 약가파일 사전제공을 위해 '26. 5. 18.(월)부터 변경 예정 (약가파일 제공 예정일자: '26. 5. 21.(목) 오전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공개범위	· 별도 제한 없이 공개	· 요양기관 및 청구S/W업체에 한정된 공개 * 인가자에 제한된 정보제공 위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
조회경로	· 심사기준종합서비스 - 청구관련기준(마스터파일)	· 심사기준종합서비스 - (신설) 약제 청구 관련 기준(약가파일)
파일구성	· 약가파일	· [청구 S/W용] 상한가 칼럼에 '별도합의 상한금액'이 반영된 「약가파일」 (기존 약가파일 형식과 동일) · [참고용] 요양기관 및 청구S/W업체 대상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인가자용) 엑셀 파일 ('상한금액표 금액' 및 '별도합의 상한금액' 모두 표기)

→ 요양기관 및 청구S/W업체는 [요양기관 업무포털](<https://biz.hira.or.kr>) →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[심사기준종합서비스] → (신설) [약제청구관련기준(약가파일)]에서 「약가파일」 및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인가자용)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의사항

- ‘별도합의 상한금액’ 은 요양급여비용(약제비) 청구 및 심사 업무를 위해 요양기관 및 청구S/W업체에 한해 제공되는 정보입니다.
 - 요양기관에서 환자 및 일반 국민 등 대외적으로 해당 약가 정보를 안내하거나 민원에 응대해야 할 경우에는 [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](www.hira.or.kr) → [제도·정책] → [약제기준정보] → [목록표] → [약제급여목록표] 내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요양기관 및 청구S/W업체에서는 ‘**별도합의 상한금액**’ 을 약제비 산정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·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문의사항

- 약가파일 제공 및 약제급여목록 관리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(연락처) 033-739-1315, 1317, 1320
- 약가유연계약 신청 및 계약 체결: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신약관리부 (연락처) 02-2167-9845, 033-736-3236
- 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총괄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(연락처) 044-202-2752

□ 본 안내문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약제비 산정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